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 - 70
------	---------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민선7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 등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마포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일자리국 신설(안 제3조, 제6조)

○ 소관부서 : 관광과, 일자리지원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생활체육과

나. 소관업무 조정에 의한 국 명칭변경(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안전행정국 ⇒ 행정관리국 (안전업무 도시환경국 이관)

○ 기획경제국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업무 관광일자리국 이관)

다. 부서 명칭변경 및 소관 국 조정(안 제3조~제9조, 제12조)

○ 부구청장 직속 : 마포구청연구단 ⇒ 마포1번가연구단 (명칭변경)

○ 행정관리국

- 부구청장 직속 공보담당관 ⇒ 행정관리국 소속 홍보과 (명칭변경)

○ 기획재정국

- 부동산정보과 : 교통건설국 소속 ⇒ 기획재정국 소속

○ 복지교육국

- 복지행정과 ⇒ 복지정책과 (명칭변경)

- 어르신복지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 (명칭변경)
- 가정복지과 ⇒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부서분리 및 명칭변경)
- 교육청소년과 ⇒ 교육지원과 (명칭변경)
- 도시환경국 : 도시안전과 신설 및 도시경관과 폐지
- 교통건설국 : 토목과 ⇒ 도로과 (명칭변경)
- 보건소 : 지역보건과 ⇒ 건강증진과 (명칭변경)
-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안 제18조)
 -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요건 추가 반영
- 마. 기타 국 분장사무 조정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표기 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부터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5. 15. ~ 5. 1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보건소장, 본청·보건소의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동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분청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둔다.

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과 마포1번가연구단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민원소통·심사·환경순찰 등을, 마포1번가연구단은 소통·협치·구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홍보과·청소행정과·민원여권과·전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구청사 관리, 인사·조직,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동행정, 동청사 관리, 행정구역 조정,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사회단체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자원 봉사에 관한 사항
3. 구정홍보, 언론보도, 뉴미디어에 관한 사항
4.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문서, 관인,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서류 처리, 민원업무 지도·감독, 자료보관 및 열람, 제증명, 가족관계등록, 여권에 관한 사항
6.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재무과·징수과·세무1과·세무2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기획·조정·심사분석, 예산 편성·배정·교부,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 지방공기업, 법제심사 및 송무, 통계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사·용역의 설계 원가계산, 계약, 복식부기 회계, 지출, 세입·세출 총괄, 결산, 직원봉급 및 제 수당에 관한 사항
3. 지방세·국세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적업무 총괄, 지적공부 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 지가조사, 부동산거래 관리, 부동산중개업,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6조(관광일자리국) ① 관광일자리국에 관광과·일자리지원과·문화예술과·지역경제과·생활체육과를 둔다.

② 관광일자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기획, 관광사업,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발전, 출판·영상·게임·공연장 등 등록 및 관리, 종교사무,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진흥, 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아동청년과·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 시설·법인 관리, 지역복지육구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지역보호체계,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출산장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청소년 지원,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 교육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도시안전과·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행정, 주택통계,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지역조합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 계획,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지구단위 사업, 축진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건축허가·착공·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축업자 지도감독, 위법 건물 관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옥외 광고물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관리 총괄, 산림보호, 조수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9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도로과·치수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통 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감독, 자동차 정비 업체 관리,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방치차량 관리, 교통환경 개선,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교통에 관한 사항
2.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에 관한 사항
3. 도로·지하도·하천·구거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토지의 사용·수용, 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집행,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관리,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하천·유수지 건설 및 유지관리, 풍수해대책, 배수펌프장 및 배수 시설 관리,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보건소

제10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직제 및 업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지도감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마포중앙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에 둔다.

제14조(관장) 마포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동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자치회관 운영,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관할구역)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구의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본청·보건소·사업소의 담당관·국·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총무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제3호 중 “복지행정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4항제4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의 “총무과”를 “도시안전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표 1의 4, 5의 “안전행정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9, 11, 14의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며, 10, 13의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토목과”를 “도로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나. 별표 2의 “복지행정과”를 “복지정책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문화진흥과”를 “문화예술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 지역경제과”로,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지원과”로, “지역보건과”를 “건강증진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삭제한다.

다. 별표 4의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문화진흥과”를 “문화예술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 지역경제과”로,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지원과”로, “지역보건과”를 “건강증진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삭제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동행정팀장”을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행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

으로 한다.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팀장”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어르신복지팀장”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출산아동팀장”을 “아동돌봄팀장”으로 한다.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여성복지팀장”을 “여성정책팀장”으로 한다.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한다.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4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4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4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한다.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4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49.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청소년지원팀장”을 “청년청소년팀장”으로 한다.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3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도로굴착팀장”을 “지하안전굴착팀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토목팀장”을 “도로계획팀장”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
환경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8항 중 “총무과장”을 “보건행정과장”
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역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안정행정국 총무과 전보아 (☎8216)